

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(제34조제2항 관련)

$$\text{권리면적률(\%)} = \frac{\text{나}-(\text{라}+\text{마}+\text{아})}{\text{가}-(\text{다}+\text{마}+\text{사})} \times 100$$

<주>

"가":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토지의 총면적

"나":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후 토지의 총면적

"다": 법 제25조제7항 본문에 따른 환지불능지

"라": 법 제34조에 따른 창설환지

"마":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 전 기능 교환 토지

"바":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 후 기능 교환 토지

"사":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토지

"아":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토지